

## 논란 없는 원리와 전건 긍정식

최 원 배

**【요약문】** 나는 최원배 (2011)에서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하게 되면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도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병덕은 이병덕 (2012)에서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하면서도 자신이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과연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하면서도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일까? 내 생각에는 그럴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논란 없는 원리, 전건 긍정식, 이병덕, 조화의 원리

1. 나는 최원배 (2011)에서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하게 되면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도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병덕은 이병덕 (2012)에서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하면서도 자신이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p. 290)고 말한다. 과연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하면서도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일까? 내 생각에는 그럴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하면 왜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지를 잠깐 되새겨 보는 데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자. 논란 없는 원리(UP, the uncontested principle)란 직설법적 조건문이 질료적 조건문을 함축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UP) A \rightarrow C \models A \supset C$$

이병덕은 자신이 내세우는 추론주의 의미론의 입장에서 이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의 주장은 이를 부정하면 다음과 같은 전건 긍정식(MP, modus ponens)의 타당성도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MP) A \rightarrow C, A \models C$$

이를 보이는 논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UP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보자. 이는 전제 ‘ $A \rightarrow C$ ’가 참인데, 결론 ‘ $A \supset C$ ’가 거짓인 경우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결론인 질료적 조건문은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인 경우에만 거짓이다. 따라서 UP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 $A \rightarrow C$ ’가 참이고 ‘ $A$ ’도 참인데 ‘ $C$ ’는 거짓인 경우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MP에 적용해보자. 이는 MP라는 추

론이 부당하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전제 ‘A → C’와 ‘A’가 모두 참인데 결론 ‘C’는 거짓인 경우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UP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MP가 부당한 추론이라는 주장으로 귀착된다.

3. UP와 MP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점을 나는 프리스트가 제시한 증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원배 (2011), pp. 90-91). 그 증명을 레몬 식의 자연연역 체계에 따라 이번에는 좀더 자세하게 적으면 다음과 같다.

(UP) $A \rightarrow C \models A \supset C$		
1	(1) $A \rightarrow C$	전제
	(2) $A \vee \neg A$	논리적 참
3	(3) $A$	가정
1,3	(4) $C$	1,3 MP
1,3	(5) $\neg A \vee C$	4 선언도입규칙
1,3	(6) $A \supset C$	5 동치
7	(7) $\neg A$	가정
7	(8) $\neg A \vee C$	7 선언도입규칙
7	(9) $A \supset C$	8 동치
1	(10) $A \supset C$	2,3,6,7,9 선언제거규칙

이 증명에서 드러나듯, 여기에 사용된 선언 관련 규칙과 동치 관계, 그리고 배중률을 문제 삼지 않는 이상, MP를 받아들이면 UP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증명에 대해 이병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최원배 ...는 ... 전건 긍정식을 받아들이면 논란 없는 원리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논증 끝 위의 증명에 해당하는 선결문제 가정(begging the question)의 오류를 범한다. 직설법적 조건문 ‘A → C’가 성립하는 이유가 ‘A ∴ C’가 정당화되는 귀납추론이기 때문이라고 하자. 그리고 전건 ‘A’가 또한

참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에 후건 ‘C’는 참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C’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C’를 (연역추론으로서의) 전건 긍정식에 의해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 $A \supset C$ ’가 성립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논란 없는 원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가정될 수 있다. 따라서 선언도입규칙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 $A \rightarrow C$ ’로부터 ‘ $A \supset C$ ’가 논리적으로 함축되는 것은 아니다(pp. 279-280).

여기에 나오는 ‘선결문제 가정의 오류’나 ‘이것은 논란 없는 원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가정될 수 있다’는 언급은 이병덕이 위의 증명에서 MP가 사용되는 (4) 단계를 구체적으로 문제 삼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는 (4)에서 사용되는 전건 긍정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MP') A \supset C, A \models C$$

다시 말해, (4)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전건 긍정식은 직설법적 조건문에 적용되는 전건 긍정식 MP가 아니라 질료적 조건문에 적용되는 전건 긍정식 MP'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위의 증명에서 주어진 전제 (1)과 (3)은 각각 ‘ $A \rightarrow C$ ’와 ‘A’이므로, MP'을 적용하려면 ‘ $A \rightarrow C$ ’로부터 ‘ $A \supset C$ ’를 먼저 얻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UP이므로 이 증명은 UP를 증명하면서 UP를 가정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고, 그런 이유에서 그 논증이 선결문제 가정의 오류를 범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실제로 이병덕이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나의 논증을 오해한 것이다. 그의 생각과 달리, (3)에서 사용되고 있고 또 실제로 사용되어야 하는 전건 긍정식은 질료적 조건문에 적용되는 MP'이 아니라 직설법적 조건문에 적용되는 MP이다.!) 이 점은 이

논증이 무엇을 보이고자 하는지를 생각해 볼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원래의 논증을 통해 내가 보이고자 한 것은 앞의 인용문에서 이병덕이 잘 서술하고 있듯이, “전건 긍정식을 받아들이면 논란 없는 원리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나는 그 증명을 통해 다음 논제를 입증하고자 한 것이다.

전건 긍정식을 받아들이면, 논란 없는 원리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물론 내가 애초 주장한 다음 논제의 대우이다.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하면, 전건 긍정식도 부정해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는 최원배 (2011)에서 “논란 없는 원리와 전건 긍정식 사이의 이런 연관성”(p. 90)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다. 그 둘 사이에 위와 같은 연관성이 있다는 논제를 주장하고자 한 것이므로, 그 증명에 전건 긍정식이 사용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전건 긍정식과 다른 선언 관련 추론을 받아들이는 이상 논란 없는 원리가 증명되므로, 논란 없는 원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보이는 것이 바로 그 논증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논증은 이병덕의 주장처럼, 선결문제 가정의 오류를 범한 것이 결코 아니다.

4. UP와 MP 사이에 이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 사람이 강조해 온 것이다. 최근 리거는 이를 우리가 앞에서 제시한

---

1)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이병덕은 MP'은 명백히 타당하다고 보지만 MP를 두고서는 불분명한 입장을 지니고 있다. 그는 MP가 어떤 의미에서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기도 하며, 이런 입장 때문에 논란 없이 적용될 수 있는 전건 긍정식은 MP'이라고 보고, 애초의 증명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증명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증명해 보인다.<sup>2)</sup>

UP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보자. 그러면 전제인 직설법적 조건문 ‘ $A \rightarrow C$ ’는 참이지만 ‘ $A \supset C$ ’는 거짓인 경우가 있다. 질료적 조건문의 특성상 그 경우 ‘A’는 참이고 ‘C’는 거짓이다. 그런데 우리가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해 MP를 받아들인다면, 지금 가정 상 ‘ $A \rightarrow C$ ’는 참이고 ‘A’도 참이므로, MP에 의해 ‘C’도 참이다. 그런데 이는 ‘C’가 거짓이라는 애초 가정과 모순된다. 따라서 UP는 성립한다.

이 증명은 귀류법 증명이다. 어쨌건 이 경우도 MP를 받아들이면, UP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 즉 UP를 부정한다면 MP도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형태의 조건 증명(CP, conditional proof)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MP를 받아들일 경우 UP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더 짧은 증명도 가능하다.

(CP) 만약  $A, B \models C$ 이면,  $A \models B \supset C$

그것은 다음과 같다.

- |   |              |
|---|--------------|
| (1) $A \rightarrow C, A \models C$        | MP가 타당하다는 가정 |
| (2) $A \rightarrow C \models A \supset C$ | (1)로부터 CP    |

이런 증명들은 모두 앞서 정식화한 논제, 즉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하면 전건 긍정식도 부정해야 하며, 전건 긍정식을 받아들이면 논란 없는 원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을 ‘논란의 여지 없이’ 잘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

<sup>2)</sup> Rieger (2012), 2절 참조.

5. 이처럼 UP와 MP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어떻게 UP를 부정하면서도 MP를 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일까? 과연 이병덕은 그런 길을 찾아낸 것일까? 그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해보자.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이병덕 (2012)에 나온 표기법대로, 전건으로부터 후건으로의 추론이 연역적으로 정당화되어 직설법적 조건문이 얻어졌느냐 아니면 귀납적으로 정당화되어 직설법적 조건문이 얻어졌느냐에 따라 직설법적 조건문을 둘로 구분하기로 하고, 이를 각각 'A → C<sub>d</sub>'와 'A → C<sub>i</sub>'로 나타내기로 하자. 그리고 이런 구분에 맞추어, 이들 직설법적 조건문에 적용되는 전건 긍정식의 형태도 세분해 보기로 하자.

먼저 'A'로부터 'C'로의 추론이 연역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직설법적 조건문 'A → C'가 정당화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병덕은 이 경우에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p. 276). 다시 말해 그는 다음 형태의 MP가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가) A \rightarrow C_d, A \models C$$

그런데 이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미 앞서 여러 증명을 통해 드러났듯이, 다음과 같은 형태의 논란 없는 원리가 성립한다는 점도 받아들여야 한다.

$$A \rightarrow C_d \models A \supset C$$

그러므로 우리는 논란 없는 원리에 대한 이병덕의 정확한 입장은 그것이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전건으로부터 후건으로의 추리가 연역적으로 타당해서 조건문이 정당화된 경우에는, 그도 논란 없는 원리가 논란 없이 성립한다는 점

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그는 그 점을 인정하고 있다.<sup>3)</sup> 따라서 논란 없는 원리에 대한 그의 입장은 그것이 어떤 ‘제한된 영역’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논의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드러난 그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넘어가기로 하자. 전건으로부터 후건으로의 추리가 연역적으로 타당해서 직설법적 조건문 ‘ $A \rightarrow C_d$ ’가 정당화되는 경우, 그는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하지도 않으며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얼핏 보면 이 입장은 이병덕 (2012)에서 그가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는 언급과 잘 조화되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 $A \rightarrow C_d$ ’와 관련해서는 그가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애초 관심은 그가 과연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하면서 동시에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지 않을 도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즉 내가 애초 내세운 논제,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하면 전건 긍정식도 부정해야 한다는 논제를 그가 피해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6. 다음으로 전건으로부터 후건으로의 추론이 귀납적으로 정당화되어 직설법적 조건문이 성립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훨씬 흥미로운 것은 이를 둘러싼 이병덕의 견해이다. 그는 그런 직설법적 조건문이 등장하는 추론 형태를 다음 두 가지로 나눈다.

(나)  $A \rightarrow C, A \vDash$  (아마도)  $C$

(다)  $A \rightarrow C, A \vDash C$

(나)에 대해 이병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3) 이병덕 (2009), pp. 140-141.



... 이와 같은 추론은 ‘아마도 C일 것이다’ 형태의 귀납적 결론을 옹호하기 위한 추론이기 때문에 귀납 추론의 일종이다. 즉 [(나)]는 연역 추론이 아니기 때문에 전건 긍정식의 경우가 아니다(p. 277).

한편 (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경우에 결론은 ... 개연성 진술이 아니라, ... 단정적 진술이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이 경우는 연역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따라서 전건 긍정식의 경우가 아니다(p. 278 각주).

나는 (나) 형태의 추론에 대해 이것이 전건 긍정식의 사례가 아니라 이병덕의 주장은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한다.<sup>4)</sup> 하지만

---

4) 이것을 전건 긍정식의 사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이유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나)가 애초에 연역 추론이 아니라 귀납 추론으로 의도된 추론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건 긍정식의 사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나)가 전건 긍정식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건 긍정식의 사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둘이 다른 것임을 이해하려면, ‘아마도’(probably)나 ‘반드시’(‘필연적으로’ necessarily, 또는 ‘확실히’ certainly) 등의 표현이 문장 ‘P’ 앞에 나올 때, 그 표현들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을 우선 분명히 해야 한다. 험펠이 이 점을 오래 전에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Hempel (1960), 3절 참조).

우선 한 가지 의미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문장 ‘P’를 한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이다. 험펠은 이런 경우를 ‘양상 한정사’(modal qualifier)라고 부른다. 가령 ‘반드시 P’를 통해, 우리는 ‘P’가 필연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을 나타내거나 ‘P’가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자의 경우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양상 연산자를 통해 표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가령 “반드시 총각은 남자이다”가 전자의 의미로 사용된 예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후자의 의미로 ‘반드시’가 사용되는 경우 그것은 순전히 수사적인 의미만을 지닌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후자의 의미를 지닐 경우, 그 표현은 가령 문장 앞에 ‘놀랍게도’, ‘다행히’ 등의 표현을 붙이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따라서 논리적 중요성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령 우리는 “철수가 오늘 모임에 왔다”는 주장과 “다행히 철수가 오늘 모임에 왔다”는 주장을 논리학에서 구분하지 않는다. ‘아마도 P’에 대해서도 비슷한 식의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P’를 통해, 우리는 ‘P’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양상 한정사의 용법과는 구분되는 다른 용법이 또 있다. 가령 다음 논증을 보자.

a는 F이다. F의 70%가 G이다. 따라서 아마도 (거의 확실하게) a는 G이다.

여기서 ‘아마도’도 앞서처럼 양상 한정사라고 얼핏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이 오해라는 점은 다음 예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a는 F이다. F는 모두 G이다. 따라서 반드시 (확실히) a는 G이다.

만약 ‘아마도’가 그런 양상 한정사라면, 위의 ‘반드시’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나오는 ‘반드시’가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점은 다음 예를 통해 볼 때 명백하다.

철수는 우리반 학생이다. 우리반 학생은 모두 철학과 학생이다. 따라서 반드시 철수는 철학과 학생이다.

만약 ‘반드시’가 양상 한정사라면, 이는 이 논증의 결론이 “철수가 철학과 학생이라는 것은 필연적이다”는 명제라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이 결론은 분명히 거짓(“철수가 철학과 학생이다”는 우연적 명제이지 필연적 명제가 아니다!)이며, 따라서 그 추론도 부당한 추론이 되고 만다. 이런 불합리한 결과는 우리가 ‘반드시’를 양상 한정사라고 잘못 이해한 때문이다. 험펠에 따를 때, 이 경우 ‘반드시’는 관계를 표현해주는 기능을 한다. 즉 그것은 “주어진 전제에 비추어보았을 때 반드시 결론이 성립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같은 이야기를 ‘아마도’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것은 “주어진 전제에 비추어보았을 때 아마도 결론이 성립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일상 논증에서 ‘반드시’나 ‘아마도’가 관계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 그것은 우리가 연역 추론을 의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귀납 추론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분간하게 하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을 통해 전제들의 지지 강도를 나타내고자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우리가 (나)를 전진 궁정식의 사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점을 말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아마도’를 양상 한정사로 이해하는 경우는

(다) 형태의 추론에 대한 그의 입장은 우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위의 두 번째 인용문을 보면, 그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따라서’로 연결하고 있다.

- (다)는 연역적으로 부당하다.
- (다)는 전건 긍정식의 사례가 아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한 가지 방식은 전건 긍정식은 명백히 타당한 추론이므로 (다)와 같은 ‘부당한’ 추론은 타당한 추론의 한 형태인 전건 긍정식의 사례일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읽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주장이라면, 이는 자신이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주장과는 잘 조화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입장이 전건 긍정식의 반례는 ‘개념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점에 있다. 이는 ‘부당한 연역 추론’은 일종의 형용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입장과 비슷하다. 이런 입장에서는 부당한 연역 추론이란 있을 수 없다. 타당한 것들만 연역 추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 입장은 지나치다고 보며, 도리어 연역 추론으로 의도된 추론 가운데 타당성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각각 연역적으로 타당한 추론과 연역적으로 부당한 추론으로 나누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 입장은 가령 맥기가 제시한 전건 강화규칙이나 가언삼단논법과 같은 어떤 추론 형태의 타당성을 문제 삼는 논리 철학적 논의를 모두 용어 문제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용어 문제로 그 논쟁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는 이병덕이 이런 입장에 서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

두 번째 이유와 관련된 것이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뒤에 나온다.

7. 그러면 이병덕의 주장을 어떻게 달리 이해할 수 있을까? 그는 과연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일까? 이에 답하려면, 먼저 (다)가 전건 긍정식의 사례인지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앞서의 인용문에 비추어 보면, 이병덕은 (다)가 전건 긍정식의 사례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그런 입장이 가능한지를 따져보기로 하자.

먼저 (다)는 (가)와 대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와도 대조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다)와 (나)의 차이는 결론에 ‘(아마도)’가 포함되어 있느냐 여부이다. 사실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온다고 말할 수 있고, 바로 그 때문에 (나)는 전건 긍정식의 사례가 아니라고 말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이병덕이 말한 ‘개연성 진술’과 ‘단정적 진술’의 구분을 받아들여 (나)의 경우에는 전제에 나오는 후건 ‘C’와 결론에 나오는 명제 ‘(아마도) C’가 다른 명제 형태여서 그들이 같은 명제여야 하는 전건 긍정식의 사례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5)</sup> 하지만 (다)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이유를 들어 그것이 전건 긍정식의 사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다)에서는 전제의 후건 ‘C’와 결론의 ‘C’가 정확히 일치하고, 그것이 모두 ‘단정적 진술’로 같은 명제 형태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인 ‘C’에서 적절한 차이를 찾을 수 없다면, (가)와 (다)를 차별화하기 위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안은 전제의 차이에 주목하는 수밖에 없다. 그 둘 사이에는 물론 차이가 있다. 하나는 전건으로부터 후건으로의 추리가 연역적으로 타당해서 정당화된 직설법적 조건문 ‘ $A \rightarrow C_d$ ’이고, 다른 하나는 그 추리가 귀납적으로 강한

<sup>5)</sup> 여기 나오는 ‘아마도’는 관계 표현이 아니라 양상 한정사로 이해되는 것이다. 앞의 각주 참조.

추론이어서 정당화된 직설법적 조건문 ‘ $A \rightarrow C_1$ ’이다. 그런데 이 차이를 과연 (가)는 전건 긍정식의 사례이지만 (다)는 전건 긍정식의 사례가 아니라는 주장의 논거로 삼을 수 있을까?

내 생각에는 그럴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렇게 볼 경우 터무니없는 결과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첫째, 전제에 등장하는 조건문이 어떤 식으로 정당화된 조건문인지에 따라 전건 긍정식의 사례인지 여부가 정해진다면, 이는 전건 긍정식이 순수한 형식적 추론임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둘째,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전건 긍정식을 사용하려면 해당 조건문이 어떻게 얻어진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전건 긍정식의 추론을 하면서 전제가 어떤 식으로 얻어진 것인지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셋째, 전건 긍정식과 같은 형식적 추론의 중요한 특성은 전제들을 받아들일 경우 별도의 고려 없이도 결론을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런 특성도 포기해야 될 것이다. 넷째, 더구나 이병덕은 (가)는 타당하지만 (다)는 부당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는 형식적 추론의 타당성 여부가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의해 정해진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조건문 가운데는 가정법적 조건문과 직설법적 조건문이 있다. 이 둘 사이에는 이들을 형태상으로 구분해주는 문법적 지표가 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직설법적 조건문 내에서 다시 그것이 연역적으로 타당해서 얻어진 것인지 아니면 귀납적으로 강한 논증이어서 얻어진 것인지를 구별해주는 표현상의 단서란 없다. 직설법적 조건문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그 조건문이 어떻게 얻어진 것인지를 결코 표시해 놓지 않는다! 결국 (가)와 (다)를 형식상 다른 추론으로 분류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도 전건 긍정식의 사례라고 인정해야 할 것 같다.

8. (가)와 더불어 (다)도 전건 긍정식의 사례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제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는 이병덕의 주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로 하자. (다)를 전건 긍정식의 사례라고 볼 경우, 가능한 방안은 두 가지이다. (다)가 타당하다고 말하거나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먼저 (다)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이병덕의 입장은 (가)는 타당하지만 (다)는 부당하다는 입장이 된다. 그런데 이는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이병덕의 주장이 실제로는 (가)의 타당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그친다는 의미이다. 이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전건 긍정식은 제한된 범위의 조건문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주장이 된다. 이는 곧 전건 긍정식이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셈이며, 결국 전건 긍정식의 보편적 타당성을 부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이병덕이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는 스스로의 주장과 조화되기 어렵다. 그가 실제로는 어떤 형태의 전건 긍정식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다)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에도 문제가 생긴다. (다)를 타당한 추론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는 다시 자신의 애초 입장과 배치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를 찬찬히 따라가보자. (다)가 타당한 추론임을 인정한다고 하자. 그러면 (가)와 (다)를 애써 구분할 이유도 사라지며, 이는 곧 MP를 그가 부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앞서 여러 증명을 통해 우리가 보았듯이, MP를 인정하면 우리는 바로 UP를 증명해 낼 수 있다. 결국 이병덕의 애초 주장과 어울리지 않게 그는 논란 없는 원리가 ‘아무 제한 없이’ 성립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다)에 대해 그것이

전건 긍정식의 사례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형식적 추론의 본성과 관련해 많은 반직관적 결과를 낳으며, (다)가 부당한 전건 긍정식의 사례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그가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주장과 조화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낳으며, (다)가 타당한 전건 긍정식의 사례라고 할 경우에는 논란 없는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애초 주장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어떤 경로를 택하든 이병덕의 입장은 불안정해 보인다.

9. 그의 입장이 지닌 어려움의 연원은 내가 이미 최원배 (2011)에서 주장했듯이, 조건문이 정당화되는 구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으로 보인다. 조건문이 연역적으로 정당화되느냐 귀납적으로 정당화되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전건만 가지고서도 후건이 연역적으로 추론되느냐 아니면 전건에 다른 전제를 추가해 연역적으로 추론되느냐의 차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점에서 조건문이란 전건으로부터 후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런 도출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기록이라고 표현한 리드의 통찰은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조건문이 정당화되는 구조를 귀납 추론을 통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전건 긍정식을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견할 만한 일이기도 하다. 그것은 결합사의 도입규칙과 제거규칙이 지켜야 하는 이른바 ‘조화의 원리’를 깨는 것이기 때문이다. 프라이어의 ‘tonk’ 예를 통해 논리학자들이 중요성을 인지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원리이다. 기본 착상은 이미 도입규칙과 제거규칙에 대한 겐첸의 유명한 구절, “도입규칙은 이른바 관련 기호의 정의를 제시하는 것이며, 제거규칙은 ... 그 정의의 결과 이외의 것이 아니다”<sup>6)</sup>에 시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학자들이

---

<sup>6)</sup> Gentzen (1969), p. 80.

그렇게 여기듯이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히 해명해 내기는 무척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화의 원리’를 통해 후대 논리학자들이 의도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대략 말할 수는 있다. 내 생각에 그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집어넣은 것만큼 정확히 꺼낼 수 있다. 혹은 꺼내려면 정확히 그만큼 먼저 집어넣어야 한다.” 도입규칙을 통해 확보된 정보량만큼 정확히 제거규칙을 통해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균형이 깨지는 것이 바로 조화의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여기 나오는 착상을 전건 긍정식의 경우에 적용해보자. 그러면 그것은 다음을 말해주는 것이 된다. 우리가 전건 긍정식(조건언 제거규칙)을 조건문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조건문 자체가 이미 전건으로부터 후건으로의 추리가 있을 경우에만 성립했기(조건언 도입규칙) 때문이다. 바꾸어 말해 우리가 조건문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미 전건으로부터 후건으로의 연역 추론이 있었다는 의미이다. 전건으로부터 후건으로의 추리가 연역적으로 타당하지 않은데도 조건문이 정당화된다고 간주하면, 전건 긍정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 경우에도 전건 긍정식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조화의 원리에 위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집어넣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꺼내는 꼴이 된다.



## 참고문헌

- 이병덕 (2009),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추론주의적 설명과 송하석 교수의 반론”, 『철학적 분석』 19호, pp. 139-147.
- 이병덕 (2012), “논란 없는 원리와 최원배 교수의 반론”, 『논리연구』 15집 2호, pp. 273-292.
- 최원배 (2011), “논란 없는 원리를 둘러싼 최근 논란”, 『논리연구』 14집 3호, pp. 85-99.
- Gentzen, G. (1969), *The Collected Papers of Gerhard Gentzen*, ed. M. E. Szabo, North-Holland Publishing Co.
- Hempel, C. G. (1960), “Inductive Inconsistencies”, *Synthese* 12, pp. 439-469, 험펠 지음, 전영삼, 여영서, 이영의, 최원배 옮김, 『과학적 설명의 여러 측면 그리고 과학철학에 관한 다른 논문들』, pp. 95-137에 재수록.
- Rieger, A. (2012), “Conditionals are Material: the Positive Arguments”, *Synthese* DOI 10.1007/s11229-012-0134-7.

한양대학교

Hanyang University

wonbae Choi@hanmail.net

---

## The Uncontested Principle and Modus Ponens

Wonbae Choi

---

In a previous paper I argued that the denial of the uncontested principle results in the denial of modus ponens. In his reply Byeong Deok Lee explicitly says that he does not deny the validity of modus ponens though he still does not accept the uncontested principle. In this paper I show that his view is untenable.

Key words: Uncontested principle, Modus ponens, Byeongdeok Lee, Principle of harmony